

	교원 연봉계약제 규정		문서번호	3-2-16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13. 03. 01.		
	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에 대한 연봉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약의 체결) ① 교원의 임용은 임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임용한다.

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, 보수, 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 ①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『교원인사규정』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에 한하여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4조(비밀유지)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보수)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.

②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.

제6조(의원사직 및 면직) ①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계약기간 중 개인적 사정에 의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. 다만,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정신적, 신체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다.

②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